

대구예술대학교 미술관 운영규정

(제정 2010.08.02. 교무위원회)

(개정 2010.12.08.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소장작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작품”이라 함은 미술관 소유 미술작품을 말한다.
2. “대여작품”이라 함은 소장작품 중 다른 기관 또는 타인에게 대여한 작품을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미술품을 구입·기증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제”라 함은 소장작품을 촬영·모사·모조를 하거나 사진원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미술관운영위원회

제3조 (미술관장의 권한과 임기) 미술관의 전시, 기획, 관리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미술관운영위원회) 미술관의 운영 및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미술관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 7인 이내로 총장의 임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미술관이 주최하는 미술전시행사의 기획 및 운영
3. 미술관 대관
4. 소장 작품의 대여
5. 미술작품 구입·기증, 관리전환
6. 소장작품의 불용결정
7. 기타 미술관 운영 및 작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장 소장작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 (작품관리기관) ① 미술관장은 미술관 소장 미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소장 미술작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제9조 (출납허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작품의 출납을 허가할 수 있다.

1. 작품의 전시 및 대여
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
3. 작품수복
4. 기타 출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작품가격의 산정) 미술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장작품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제11조 (작품의 보관) ① 소장작품은 수장고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복과 수리 중에 있는 작품과 전시작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장고 내에는 소장작품 이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제12조 (소장작품 관리대장 기록)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장작품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작품의 수복) ① 작품의 수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1. 훼손되어 원형보존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작품의 수복은 처리 전 작품상태 및 처리방안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 후 즉시 위원회에 수복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부분 수복의 경우에는 처리 후 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제14조 (작품의 복제허가신청) ① 소장작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복제예정일 15일 전까지 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복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여) 미술관의 작품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의 전시를 위하여 소장작품을 외부에 대여 할 수 있다.

제16조 (대여의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장작품을 대여 할 수 있다.

1. 정부·공공기관 및 단체 또는 공공미술관등이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미술관회원이 개최하는 전시
5.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

제17조 (대여신청) 소장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작품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15일 전까지 미술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대관

제18조 (대관) 미술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미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를 위하여 미술관을 유료로 원칙으로 대관할 수 있으며, 대관료는 미술관장이 정하되 총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제19조 (대관신청) 미술관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무료대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미술관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미술관이 기획 또는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전시회
2. 미술관 회원의 작품 전시회
3. 기타 미술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제21조 (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시 대한민국예술원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8일 부터 시행한다.